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관리 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이 법에서 정한 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38조의2, 제40조제4호, 제40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제1호의4, 제46조제1항제7호, 제54조제4항제7호 신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반환, 영유아의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환수를 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마련(안 제45조제1항제5호나목,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이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5년 이내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5년 이내의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4항제8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육료 등의 수납)”을 “(보육료의 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를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1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4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5호나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용(流用)”을 “유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제1항제1
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8호 중 “제46조제4호”를 “제4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5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4항제6호 중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을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3항, 제16조제8호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같은 항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이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46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임) ① · ② (생 략)	제4조(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도지사</u> · 시장 · 군	③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u>
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u>지사</u> -----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
관한 각종 정책 · 사업 · 보육지	-----
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	-----
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
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
를, 특별시 · <u>광역시</u> · 도 · 특별	----- <u>광역시 · 특별자치</u>
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u>시</u> -----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	-----
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	-----
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	-----.
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	-----
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	-----
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	-----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조례로	-----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

지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
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
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
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
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3. (생략)

4.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의2에 따른 소방 · 방재 분
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 ----- 특별자치시장 · 특
별자치도지사-----

-----.

③ -----

5명 -----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u>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7. ----- ----- <u>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 ----- -----
9. (생략) <u><신설></u>	9.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u> <u>「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u>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u>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 -----

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 (생략)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생략)

⑤·⑥ (생략)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제38조제1항 -----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신설>

5. (생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생략)

<신설>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2.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
----- 기한까지 -----

-----.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

-----.

1. -----

유용(流用)---

2.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

5. 6. (생 략)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u>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u> 8. 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8호까지----- ----- -----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4의8. (생략)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 8. (생략)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illegible]

1. ~ 4의8. (현행과 같음)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 8. (현행과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illegible]

-- 제4호 또는 제5호나목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략)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

1. -----

----- 유용-----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
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

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5. (생략)

<신설>

----- 5년 -----

-----.

1. ~ 4. (현행과 같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신 설>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
장이 한 행위로 본다. 다만, 어
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
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
해를 입은 경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
여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
게 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
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 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 육교사의 자격취소) ①보건복지 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 소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

----- 5
년-----

-----.

1. 2.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 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 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 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 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 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1항제4호-----

우

② (생 략)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1항-----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4조(벌칙)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신설>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

7. (생 략)	<u>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u> <u>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u> <u>정하게 사용한 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541